

# 주요 경영상황 공시

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3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2015 년 9 월 4 일

금융투자협회 귀중

회 사 명 : 주식회사 머스트투자자문  
(영문명) Must Investment Advisory  
(홈페이지) <http://mustinvestment.com>

본 점 소 재 지 : 서울시 강남구 도곡2동 467-14 삼성엔지니어링 12층  
(전 화) 02-578-5080

대 표 이 사 : 김두용, 구은미

담 당 임 원 : (직 책) 경영기획팀장  
(성 명) 박상은 (전 화) 02-578-5080

작 성 자 : (직 책) 매니저  
(성 명) 이지원 (전 화) 02-578-5080

제 출 이 유 :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 2-59 조에 의한 주요 경영상황

※ 본 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상황 공시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3 조제 3 항, 동법 시행령 제 36 조제 2 항제 1 호바목, 같은 항 제 2 호다목, 같은 항 제 3 호다목 및 같은 항 제 4 호라목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 2-59 조에 의한 『법정공시사항』으로 그 내용에 허위,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449 조제 1 항제 15 호에 의거 5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## 임시주주총회 결과

1. 결의사항	회사분할에 관한 경과 보고의 건
2. 주주총회 일자	2015.09.04.
3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	-

\* 본 안건은 금융당국의 승인으로 진행되는 사안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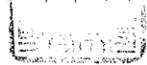


[별첨]

### 회사 분할 경과 보고

본 회사는 2015년 3월 16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분할계약서에  
기하여 분할에 관한 법정절차 및 권리의무의 이전을 행하였는바 그 경과에 대하여  
다음과 같이 보고함.

1. 본 회사의 사업 중 분리되는 사업부문(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)에 의해  
사용되거나 추후 사용을 위해 보유되는 등 분리되는 사업 부문에 배타적으로  
귀속되는 회사의 모든 자산, 계약, 권리, 책임 및 의무는 분리 되는 사업  
부문에서 발생하였거나 관련이 되는 범위에서 분할기준일 현재 신설회사인  
주식회사 머스트투자자문로 이전됨.
2. 본 회사는 분할로 인하여 자본금은 감소하지 아니함.
3. 분할의 결과 본 회사는 신설회사인 주식회사 머스트투자자문가 분할시 발행하는  
신주 전체를 인수·취득 하였음.
4. 본 회사는 분할 기준일자로 회사의 상호 및 목적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.  
제1조(상호) 이 회사는 “주식회사 머스트홀딩스”라 한다. 영문으로는 “Must  
holdings Inc.”라 표기한다.  
제2조(목적)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1. 유가증권 및 기타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업
  2. 시장조사,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
  3. 부동산 투자, 개발, 임대 및 공급업
  4. 브랜드,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라이선스업
  5. 프랜차이즈업
  6.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



일자: 2015년 9월 5일

주식회사 머스트투자자문

공동대표이사	김 두 용
공동대표이사	구 은 미

